

의안번호	2209914
의 퇴 인	김교홍의원
회 답 일	2025.6.18.
추계번호	25B2385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의2 신설 (탄소중립사회 이행과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)	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, 산업집적지,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66조의2 (탄소중립사회 이행과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 수립·시행 (안 제66조의2제1항)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산업단지, 산업집적지,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 수립·시행이 의무화될 경우, 관련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환경부에 따르면, 정부는 동법 제61조¹⁾에 따라 녹색기술·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

지의 조성·지원 사업 추진 시 필요 에너지를 신·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고 있고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²⁾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

- 다만,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정안의 시행으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구성·운영 (안 제66조의2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,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동법 제15조³⁾에 따라 대통령 소속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가 구성되어 있

1) 제61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)

-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,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1. 집적지·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
 2.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
 3.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·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
 4. 녹색기술·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
 5.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·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·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- 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·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2) 제27조(보급사업)
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.
 1.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
 2. 환경친화적 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(集積化團地)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
 3.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
 4. 실용화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
 5. 그 밖에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.

3) 제15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)

으나, 추후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~ ⑨ 생략